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외 출원비용 세액공제 신설〉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16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해외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정일영의원안)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일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5.

다. 회 부 일 : 2025. 1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소프트 머니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어날 시 GDP가 0.4% 올라간다고 분석하고 있음.

해외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해외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정일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u>해외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 25조의8)</u> ○ 세액공제 요건: 내국인이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 세액공제 대상: 해외출원비용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비용)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출원비용은 제외 ○ 세액공제율: 일반 10%, 중견 20%, 중소 30%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법 시행 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

* 정일영의원안 2025. 11. 5. 발의(의안번호 13916)

☐ 개정안은 내국인이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입료 등 해외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의 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560,629건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음. 유형별로는 특허 출원 246,245건, 실용신안 출

원 2,442건, 디자인 출원 55,897건, 상표 출원 256,045건임.

[연도별 지식재산권출원 건수]

(단위: 건)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2020	226,759	4,981	67,583	257,933	557,256
2021	237,998	4,009	64,787	285,821	592,615
2022	237,633	3,084	56,641	259,078	556,436
2023	243,310	2,746	55,335	255,209	556,600
2024	246,245	2,442	55,897	256,045	560,629

자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통계연보」

또한, 2023년 기준 한국인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총 176,948건이었고, 국가별로는 미국에서의 출원이 55,046건, 중국에서의 출원이 36,823건, 일본에서의 출원이 14,632건, 유럽특허청에서의 출원이 12,582건, 유럽연합에서의 출원이 5,234건이었음.

[한국인의 출원루트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2023년 기준)]

(단위: 건)

구 분	특 허		디자인		상 표		계
	직접 출원	국제 출원	직접 출원	국제 출원	직접 출원	국제 출원	
합계	57,637	40,970	5,554	3,508	39,541	29,738	176,948
미국	33,249	11,765	1,533	548	5,256	2,695	55,046
중국	12,475	7,541	1,850	391	12,529	2,037	36,823
일본	3,041	4,879	439	313	3,717	2,243	14,632
유럽특허청	4,074	8,508	-	-	-	-	12,582
유럽연합	-	-	343	1,041	1,815	2,035	5,234

주) 출원인의 국적 또는 거주국이 대한민국인 출원 건 대상

자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통계연보」

2024년에 한국인이 IP5국가¹⁾(우리나라 포함)에 출원한 특허는 2023년 대비 2.7% 증가한 282,523건을 기록했음.

□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적재산권의 선점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지적재산권 출원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해외 특허출원 건수 증가는 매출액, 수출액, 부가가치 등 기업성과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²⁾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별 기업당 해외 특허출원 1개 증가 시 개별 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대효과는 대기업 약 5억 2천만원, 중소기업 약 2억 2천만원으로 추정되었음.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데, 지식재산처의 「202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71.4%, 중견기업의 70.3%, 중소기업의 44.3%가 지식재산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대기업은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지식재산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등은 지식재산활동 애로사항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5개국 그룹으로서, 유럽, 일본, 중국, 미국, 우리나라가 해당됨.

2) 특허청, 해외 특허출원이 중소 제조기업의 성장 및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20. 12.

따라서, 해외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해외 출원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2017년 유사한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시행했으나, 타당성이 부족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됐다는 이유 등으로 제도 신설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임.

특히, 예비타당성평가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보다는 국내 지식재산권 증가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되었음.

그러나 당시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이었던 조세특례 제도는 국내 및 해외 특허권 등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인 반면, 동 개정안은 해외 출원·등록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다만, 해외 특허 출원·등록을 위한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 특허 출원·등록에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 해외 특허를 1건 이상 출원하거나 등록한 기업의 비율은 대기업이 23.0%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은 11.3%로 낮아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또한, 2023년 한 해 동안 해외 지식재산권의 출원·심사·유지비용으로 기업은 평균 78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업유형별로 보면, 대기업 6,416만원, 중견기업 3,001만원, 중소기업 594만원 순으로 지출했음.

즉, 대기업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이미 활발하게 해외 특허 출원·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5